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가단1496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650,428원 및 그 중 8,973,387원에 대하여 2021.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5. 체결된 증여계약을 15,650,4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C은 원고에게 15,650,42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가액배상 의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증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과 2000. 12. 1. 결혼하여 생활하다가 2015. 4. 6. 피고 B의 불륜, 도박으로 피고 C이 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오다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2017. 7. 5. 피고 C이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또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담보대출 1억 2천만 원을 피고 C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 B의 책임재산을 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등으로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을나 제1 내지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01. 1. 4. 피고 B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21. 3. 16. 이혼을 하였는데, 피고 C은 이혼하기 전인 2015.경부터 202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우체국 및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피고 B에게 돈을 다수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 C은 피고 B과 이혼하기 약 3년 전으로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2017. 7. 5. 당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던 점, ② 피고 C이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현실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③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2017. 7. 5. 당시 상당히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④ 피고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 C 역시 피고 B의 이러한 재산상황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실제로는 증여가 아닌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거나 피고 C에게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철환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이천시 동[도로명주소] 경기도 이천시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슬래브지붕 10층 아파트

1층 655.818㎡,

2층, 3층 각 644.898㎡,

4층 내지 10층 각 636.498㎡,

지층 601.78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이천시 대 25415.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8층 호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84.42㎡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25415.4분의 97.75 ㎡,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위 B은 위 양수금 채무의 '채무자'이며, 피고 C은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사해행위인 증여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악의의 '수익자'입니다.

2.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가. 양수금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1) 피고 B은 2002. 1. 7. 소외 주식회사 D의 신용카드 회원약관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며(갑 제1호증의 1 카드신청서 참조),

위 신용카드를 통해 신용대출 서비스(카드론)를 받았습니다(갑 제1호증의 2 대출원장조회표 참조).

그런데 위 B은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D는 2019. 4. 3.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채권들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따라서 위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15,650,428원(= 신용카드 사용대금 2,373,531원 + 신용카드 카드본 13,276,897원) 및 그 중 금 8,973,387원(= 1,358,494원 + 7,614,893원)에 대하여는 2021.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3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2) 그러므로 원고는 (1) 항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금 지급을 구하며,

후술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있어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위 (1) 항의 채권액인 15,650,428원(= 2,373,531원 + 13,276,897원)입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피고 B는 2017. 7. 5. 피고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7. 5. 피고 C에게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대법원은 '증여행위의 사해성'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

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참조).

채무자인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재산 가치 있는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입니다.

피고 C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피고 B의 2017. 7. 5.자 증여계약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3)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고 하는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 C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C 및 피고 B 사이의 2017. 7. 5.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2)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손해행위 이전인

2016. 10. 24. 접수 제48565호로 ‘채권최고액 1억 4,7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갑 4 을구 7면 참조),

가 마쳐졌었으나,

이 사건 손해행위 이후인

2017. 8. 1. 말소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또한 이 사건 손해행위 이후인

2017. 7. 31. 접수 제32837호로 ‘채권최고액 1억 4,484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갑 4 을구 9면 참조)

가 마쳐졌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손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함에 있어서 원물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이므로, 원고는 2021. 3. 15.까지의 피보전채권액인 금 15,650,428원을 한도로 손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 청구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